

의안번호	제758-1호
의결 연월일	2017년 월 일 (제360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수정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7년 12월 2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758-1
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2월 20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강력한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축방역 전담과 신설 및 소방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소방직공무원 직급 조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(안 별표 2)
  - 소방장 : 15%이내 → 18%이내
  - 소방교 : 31%이내 → 30%이내
  - 소방사 : 29%이상 → 27%이상
-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  - 일반직 : 1,479명
    - 4급 : 1명 → 2명(+1), 5급이하 : 30명 → 29명(△1)

**3. 의안전문 : 불 임**

**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**

**5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**

**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**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2]

**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**

**1. 일반직공무원**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 · 9급	전문경력관
비 율	6% 이내	18% 이내	33% 이내	34% 이내	7.5% 이상	1.5% 이내

**2. 연구직 · 지도직공무원**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20% 이내	80% 이상	26% 이내	74% 이상

**3. 소방직공무원**

구 분	소방정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2% 이내	4% 이내	10% 이내	9% 이내	18% 이내	30% 이내	27% 이상

**4. 별정직공무원**

구 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34% 이내	26% 이내	10% 이내	10% 이내	18% 이내	2% 이상

\*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##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
총 계		3,481		-			
정무직 계		1	1				
도지사		1	1				
일반직 계		1,479		-			
1~2급		1					1
2~3급		2	1	1			
3급		9	7		1		1
3~4급		2	2				
4급		69	44	7	5	7	6
5급이하 소계		1,378		-			
전문경력관 소계		18		-			
별정직 계		12		-			
1급 상당		1	1				
4급 상당		3	3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	8					
연구직 계		159		-			
연구관		30	1		27	2	
연구사		129		-			
지도직 계		26		-			
지도관		6			6		
지도사		20		-			
소방직 계		1,761		-			
소방정		18	6		12		
소방령이하		1,743		-			
교육공무원 계		43		-			
총장		1			1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전임강사		30			30		
조교		12		-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략)

#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 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 · 도의 5급 이하(시 · 군 · 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~ ⑤ (생략)